

임선영. 2020. “재난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인권연구』 3(1): 151-154.
Lim, Sun Young. 2020. “Disasters do not discriminate people”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3(1): 151-154.

[현장논단]

재난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재난상황을 사회적 연대 의식으로 향상 시키는
기회로 만들자!

임 선 영*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단순히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중단시켰다. 인간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삶을 위협하는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발빠르게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대응과정에서 이주민·난민,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비차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인권 이슈에 대한 위원장 성명, 현장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추진,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사건 조사,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UN 등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 및 국내 전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은 언어와 문화 장벽, 비용, 정보 접근성 결여, 차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재난상황에서 특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지적이 있다.

이는 그동안 국내의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국사회에 던진 문제제기였다.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2019년 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에서, 이주민 응답자 68.4%, 공무원·교원 응답자 89.8%가 ‘한국에 대체로(매우, 조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무엇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이주민 당사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는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주민들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등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2020년 3월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수립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 백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배제되면서 이들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2020년 3월 18일 ‘인권 중심 및 비차별적원칙에 기반한 보건정책의 수립과 시행 협조 요청’의 공문을 관계부처에 시행하였고, UN이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한 3월 21일을 기념하여,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적 지위 부여를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의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

포하였다.

또한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사건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5. 21.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재난은 같은 지역 내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해 겪게 되는 것으로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위험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12조·제13조 및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또한 지자체 주민으로서 한국국적의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자체 영역 내에서 겪는 재난을 동일하게 혹은 가중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는 인도주의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해 온 외국인주민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의무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며 회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적 마스크 배포 및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민 배제 이외에도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도 없이 무급휴업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일터에서의 차별, 의료시설 접근과 아동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 결여, 일상에서 심화되는 혐오 등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20년 5월말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이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화된 조사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토론회를 6~7월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의 폭넓은 사회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종차별적 인식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차별을 시정하고 이주민·난민,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 그리고 현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권고와 조사구제 등의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사회로 이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